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20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 지침

Guidelines for a phytosanitary import regulatory system

(2023)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FAO. 2023. *Guidelines for a phytosanitary import regulatory system*.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20.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2023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3 (한국어 번역)"

"© FAO, 1995–2023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 1995-09 TC-RPPOs가 수입 규제(1995-003)을 주제로 추가
- 1996-1997 IPPC 사무국이 초안을 작성
- 1997-10 CEPIM-4가 초안 수정을 요청
- 1998-05 CEPIM-5가 초안을 재검토
- 2000-05 ISC-1이 초안 재작성을 요청
- 2001-05 ISC-3이 전문가 작업단이 초안을 재작성할 것을 권고
- 2002-04 전문가작업단이 초안을 작성 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함
- 2002-11 SC가 감귤류양병 관련 문제를 논의하여 제출됨
- 2002-2003 소규모 작업그룹이 이메일을 통하여 초안을 수정
- 2003-05 SC-7이 초안을 수정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 2003-05 1차 회원국 의견수렴
- 2003-11 SC가 채택을 위하여 초안을 수정
- 2004-04 ICPM-6이 기준을 채택
- ISPM 20. 2004.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 지침, Rome, IPPC 사무국, FAO.

- 2013-08 IPPC 사무국이 CPM-8(2013)에서 인지한 미미한 수정(ink amendments)을 적용
- 2014-05 IPPC 사무국이 목차의 실수를 수정
- 2015-06 IPPC 사무국이 미미한 수정을 포함시키고, CPM-10(2015)에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정비(reform)

- 2005-04 CPM-7은 ‘규제병해충에 대한 현지검역(pre-clearance)’ 주제를 추가 (2005-003)
- 2006-01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작업지시서 초안이 제출됨
- 2006-11 SC가 작업지시서를 승인
- 2008-09 전문가작업단이 부속서 초안 작성
- 2011-05 SC가 초안을 검토하고 간사에게 돌려보냄
- 2012-04 SC가 초안을 검토하고 추가의 작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 2012-12 간사가 소규모 SC 그룹과 초안을 수정
- 2013-05 SC가 현지검역과 관련된 개념이 명확해질 때까지 검토를 연기함
- 2014-05 SC가 현지검역과 관련된 개념을 논의

2014-11 SC가 현지검역과 관련된 개념 및 정의를 논의
2015-05 SC가 초안을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
2015-07 1차 회원국 의견수렴
2016-02 간사가 의견을 검토하고 초안을 수정
2016-05 SC-7이 ISPM 20의 부속서 초안을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
2016-07 2차 회원국 의견수렴
2016-11 SC가 초안을 수정하고 CPM-12(2017)에 채택을 권고
2017-04 CPM-12가 ISPM 20 부속서 1을 채택
ISPM 20. Annex 1. 2017.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준수 확인을 위한 협의(arrangements). Rome, IPPC, FAO.

2017-05 IPPC 사무국은 채택 부분에 편집 관련 수정
2017-06 사무국은 양식 관련 수정
2019-04 CPM-14은 “오염” 용어와 이의 파생어에 대한 미미한 수정이
추가된 것을 인지

2008-04 CPM-3은 특정 수입 허가(authorization)를 주제로 추가
(ISPM 20의 부속서: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 지침) (2008-006)
2016-11 SC는 작업지시서 64(특정 수입 허가 사용)을 e-decision으로 승인
2021-02 전문가작업단이 영상으로 만나고 부속서 초안 작성
2021-05 SC가 수정하고 1차 의견수렴을 승인
2022-07 1차 의견수렴
2022-05 SC-7가 수정하고 2차 의견수렴 승인
2022-07 2차 의견수렴
2022-11 SC가 수정하고 CPM 채택을 위하여 권고
2023-03 CPM-17이 ISPM 20의 부속서 2을 채택
ISPM 20. 부속서 2. 2023. 특정 수입 허가 사용. 로마, IPPC 사무국, FAO.

2023-04 IPPC 사무국은 IPPC와 FAO 스타일에 맞도록 미미한 구두점과
대문자 수정을 하고 오타를 수정

출판 이력은 2023.4월 최종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 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요건

1. 목적

2. 구성

3. 권한, 의무 및 책임

3.1 국제 협약, 원칙 및 기준들

3.2 지역 협력

4. 규제의 틀

4.1 규제물품

4.2 규제물품에 대한 식물위생조치

4.2.1 수입될 화물들에 대한 조치

4.2.1.1 특별 수입에 대한 규정

4.2.1.2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병해충저발생 지역 및 공적 방제 프로그램

4.2.2 수입 허가

4.2.3 금지

4.3 경유 화물

4.4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관련 조치

4.5. 규제의 틀을 요구할 수도 있는 여타 요소

4.6 NPPO의 법적 권한

5. 식물위생 수입 규제 제도의 운영
 - 5.1 NPPO의 관리 및 운영상 책임
 - 5.1.1 행정
 - 5.1.2 규제 개발 및 개정
 - 5.1.3 예찰
 - 5.1.4 병해충위험분석 및 병해충 목록화
 - 5.1.5 감사 및 준수 절차
 - 5.1.5.1 수출국에서의 절차 감사
 - 5.1.5.2 수입 시 준수 절차
 - 5.1.5.2.1 검사
 - 5.1.5.2.2 시료채취
 - 5.1.5.2.3 실험실 정밀 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testing)
 - 5.1.6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 5.1.6.1 위반 시의 활동
 - 5.1.6.2 긴급활동
 - 5.1.6.3 위반 및 긴급활동의 보고
 - 5.1.6.4 식물위생 규정의 철회 및 수정
 - 5.1.7 NPPO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증 시스템
 - 5.1.8 국제 연락(liaison)
 - 5.1.9 규정 정보의 통보 및 배포
 - 5.1.9.1 신규 또는 수정된 식물위생 규정
 - 5.1.9.2 설정된 규정의 배포
 - 5.1.10 국가 연락(liaison)
 - 5.1.11 분쟁 해결
 - 5.2 NPPO의 자원
 - 5.2.1 훈련을 포함하는, 직원
 - 5.2.2 정보
 - 5.2.3 장비 및 시설

문서화, 의사소통과 검토

6. 문서화

6.1 절차

6.2 기록

7. 의사소통

8. 검토 기작

8.1 시스템 검토

8.2 사례 검토

부속서 1: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준수 확인을 위한 협의
(arrangements) (2017)

1. 합의의 일반적 요건

2. 합의를 작성하는 절차

2.1 제안

2.2 평가

2.3 요소들

2.4 기술적 요건들

3. 합의의 이행

4. 합의의 재검토

5. 합의의 종료

부속서 2: 특정 수입 허가의 사용

1. 특정 수입 허가(authorization)의 종류

2. 특정 수입 허가의 요소들

2.1 필요한 정보

2,2 언어

3. 특정 수입 허가의 사용

4. 책임

4.1 수입국 NPPO

4.2 수입자

4.3 수출자

4.4 수출국 NPPO

채택

이 기준은 2004년 3-4월 제 6차 ICPM(잠정식물위생조치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속서 1은 2017년 4월 CPM에서 채택되었다. 부속서 2는 2023년 3월 CPM에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이 기준은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구조와 운영 및 그 시스템을 설정, 운영 및 개정하는데 있어 고려해야 할 권리, 의무와 책임을 기술하고 있다.

참고 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1997.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Rome, IPPC, FAO.

WTO. 1994.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

정의

본 기준에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는 ISPM 5(식물위생 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목적은, 수입되는 품목들 및 여타 규제물품들과 함께 검역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은 두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 식물위생 법령, 식물위생 규정, 식물위생 절차에

대한 규제 틀과; 그 시스템에 대한 운영과 감독 책임이 있는 공식 기관인 국가식물보호기관(NPPO). 법적인 틀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NPPO의 법적 권한을 포함해야 한다; 수입된 품목들이 준수해야 하는 식물위생조치; 수입된 품목들과 다른 규제물품 관련 다른 식물위생조치(금지 포함); 위반 사항 또는 긴급활동이 필요한 경우가 발견되었을 때 행해질 수도 있는 식물위생 활동. 경유 화물에 관한 식물위생조치도 포함될 수도 있다.

수입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NPPO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예찰, 검사, 방제(disinfestation) 및 소독(disinfection), 병해충 위험분석의 실시 및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개발을 포함하는, 수입과 관련한 IPPC의 IV.2에 규정된 책임을 포함한다. 이들 책임은, 행정; 감사와 준수 점검; 위반사항에 취해지는 활동; 긴급활동; 직원에 대한 권한 부여; 분쟁 해결과 같은 분야의 관련 기능을 포함한다. 추가로 체약국은, NPPO에 규제 개발 및 수정과 같은 다른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다. NPPO의 자원(resources)은 이러한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또한, 이들은 국제적 및 국내적 연락(liaison), 문서화, 의사소통 및 검토를 위한 요건이다.

요건

1. 목적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목적은, 수입되는 품목들 및 여타 규제물품들과 함께, 검역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데 있다.

2. 구성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식물위생 법령, 식물위생 규정, 식물위생 절차에 대한 규제 틀;
- 동 시스템의 운영에 대해 책임이 있는 NPPO.

법적, 행정적 시스템과 구조는 계약국들 간에 다르다. 특히, 어떤 법률 시스템은, 법률 내에 공무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요구하는 반면, 다른 경우는 공무원이, 크게 행정적 절차를 통하여 그들의 기능을 수행할 위임된 권한을 가진 범위 내에서, 광범위한 틀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규제적인 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이 규제의 틀은 4항에서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NPPO는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운영 또는 감독(조직 및 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공적 기관이다. 세관과 같은 다른 정부기관은, 수입된 품목들의 통제에 역할(책임과 기능에 대한 정해진 분리)을 가질 수도 있으며, 연락(liaison)이 유지되어야 한다. NPPO는 종종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이용하지만, 제한된 기능에 대하여 기관을 대신하거나 또는 그의 통제 하에 활동할, 다른 적절한 정부기관들, 비정부기관들 또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시스템의 운영은 5항에 기술되어 있다.

3. 권한, 의무 및 책임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을 설정하고 운영함에 있어, NPPO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관련 국제조약, 협약 또는 협정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의무 및 책임
- 관련 국제기준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 의무 및 책임
- 국가 법령 및 정책
- 정부, 부처 또는 국 또는 NPPO의 행정 정책

3.1 국제 협약, 원칙 및 기준들

국가 정부는, 자국의 적정보호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적 의무를 (obligations) 고려하면서, 수입을 규제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협정들 특히 IPPC와 WTO/SPS(WTO, 1994) 협정으로부터 유래한 원칙이나 기준 뿐만 아니라 국제협정과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책임은,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구조와 이행에 영향을 준다. 여기에는 식물위생 수입 규정의 작성과 채택, 적용 및 그 규정에서 유래한 운영상의 활동에 대한 영향이 포함된다.

식물위생 규정의 작성, 채택 및 적용은, 다음을 포함하는, ISPM 1(국제교역에서 식물보호와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을 위한 원칙)과 같은 특정 원칙과 개념의 인정을 요구한다.

- 투명성;
- 주권;
- 필수성;
- 비차별;
- 최소 영향;
- 조화;
- 기술적 정당성(병해충위험분석(PRA)을 통한 것과 같은);
- 일관성;
- 관리된 위험;
- 수정;
- 긴급활동 및 잠정조치;
- 동등성;
- 병해충무발생 지역 및 병해충저발생 지역.

특히, 식물위생 절차와 식물위생 규정은, 최소 영향 개념과 불필요한 무역 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적, 운영적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3.2 지역 협력

지역식물보호기구(RPPOs)와 지역 농업개발기구와 같은 지역 기구들은 소속 회원국들의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조화를 권장할 수도 있으며,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의 교환에 협력할 수도 있다.

FAO에 의해 인정된 지역 경제통합기구는, 소속 회원국들에게 적용할 규칙을 가질 수도 있으며, 또한 그 기구의 회원국들을 대신하여 특정한 식물위생 규정을 제정·시행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4. 규제의 틀

규정을 공포하는 것은 정부(체약국)의 책임이다(IPPC IV. 3(c)). 그 책임과 일관성이 있도록 체약국은 NPPO에게 식물위생 수입 규정의 작성과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 이행에 대한 권한을 제공할 수도 있다. 체약국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수입 규제 시스템과 관련된 NPPO의 책임과 기능에 대한 설명 (specification);
- NPPO가 수입 규제 시스템과 관련하여 그 책임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
- 수입 식물위생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PRA를 통하는 것과 같은, 권한과 절차;
- 수입된 품목들과 다른 규제물품에 적용할 식물위생조치;
- 수입된 품목들과 다른 규제물품에 적용할 수입 금지;
-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법적 권한;
- NPPO와 다른 정부기관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
- 규정의 발효를 포함하는, 규정 이행에 대한 투명하고 정의된 절차 및 시한.

체약국은 IPPC VII.2(b)에 따라 규정을 가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진다; 이 절차는 규제 근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4.1 규제물품

규제될 수도 있는 수입된 품목들은, 규제병해충에 감염되거나 오염될 수도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규제병해충은 검역병해충이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다. 모든 품목들은 검역병해충을 이유로 규제될 수 있다. 식용 또는 가공용 상품은 규제비검역병해충을 이유로 규제될 수 없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은 재식용 식물과 관련하여서만 규제될 수 있다. 규제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재식용, 식용, 가공용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식물 및 식물성 산물;
- 보관 시설;
- 짚갈개를 포함한 포장재;
- 수송 및 운송시설;
- 흙, 유기질 비료 및 관련 물질;

- 병해충이 숨거나 전파될 수 있는 생물체;
- 잠재적으로 오염된 장비(중고 농업용, 군용과 지표면을 이동하는 장비);
- 연구 및 다른 과학적 물질;
-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여행자의 개인 소지품;
- 국제 특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국제 우편;
- 병해충 및 생물방제제¹

규제물품의 목록은 공개되어야 한다.

4.2 규제물품에 대한 식물위생조치

체약국들은 식물위생조치가 식물위생 상의 고려에 의해, 필수적이고 기술적인 정당성이 없다면, 금지, 제한, 또는 다른 식물위생 수입요건과 같은, 규제물품 반입에 대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해서는 않된다. 체약국들은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할 때, 적절한 경우, 국제기준들과 기타의 관련 요건들과 IPPC의 고려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4.2.1 수입될 화물들에 대한 식물위생조치

식물위생 규정은, 식물 및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의 수입 화물이 준수해야 할 식물위생조치를 특정해야(specify)² 한다. 이러한 식물위생조치는 모든 화물의 유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도 있으며, 또는 그 조치가 특정 원산지 산 특정 품목에 적용될 경우에는 특이할 수도 있다. 식물위생조치는 반입 전, 반입 시 또는 반입 후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경우, 시스템적 접근이 이용될 수도 있다(ISPM 14(병해충위험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에서 종합적 조치들의 사용) 참조).

수출국의 NPPQ가 증명(ISPM 7(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을 위하여 필요로

¹ 그 자체로서 병해충과 생물방제제는 “규제물품”의 정의(IPPC II.1) 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술적인 정당성이 있을 경우, 이들은 식물위생조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규제병해충과 관련된 IPPC VI, VII.1(c), VII.1(d)와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해서 규제물품으로 고려될 수도 있다.

² 이 기준의 목적에 따르면 수입은, 무역 자유지역(면세지역과 보세창고의 화물을 포함) 내 이동과 다른 기관에 의해 유치된 불법 화물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로 들어오는(경유 제외) 모든 화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 수도 있는, 수출국에서 요구되는 식물위생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수출 전 검사;
- 수출 전 정밀검사;
- 수출 전 소독처리;
- 특정한 식물위생 상태의 식물에서 생산됨(예를 들면, 바이러스 검정을 거친 식물로부터 자라거나, 또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생육된);
- 수출 전 재배 기간 중 검사 또는 정밀검사;
-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병해충저발생 지역 또는 병해충무발생 지역인 화물의 원산지;
- 인증 절차;
- 화물의 보전성(integrity) 유지.

선적 중에 요구될 수도 있는 식물위생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소독처리(예를 들면, 적절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소독처리);
- 화물의 보전성 유지.

반입항에서 요구될 수 있는 식물위생조치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문서 점검;
- 화물의 보전성 확인;
- 선적 중 소독처리 확인;
- 식물위생 검사;
- 정밀 검사;
- 소독처리;
- 소독처리 효과에 대한 정밀 검사 또는 입증 결과를 보류하는 화물의 유지.

반입 후 요구될 수도 있는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검사, 정밀 검사 또는 소독처리를 위한 검역에 유치(예 : 반입 후 검역 시설);
- 특정한 조치를 보류하며, 지정된 장소에 유치;
- 화물의 유통(distribution)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예: 특정 가공).

여타의 필요할 수도 있는 조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면허 또는 허가를 위한 요건;
- 특정한 품목들에 대한 반입항의 제한;
- 수입자가 특정 품목들의 도착 전에 통지하는 요건;
- 수출국에서의 절차에 대한 감사;
- 현지검역(pre-clearance).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은, 평가와 수출국에 의해 제안된 대안적 식물 위생조치를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4.2.1.1 특별 수입에 대한 규정

체약국은 과학적 연구, 교육 및 여타의 목적을 위하여, 병해충, 생물방제제 (ISPM 3(생물방제제 및 기타 유용 생물체의 수출, 선적, 수입 및 방사를 위한 지침) 참조)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수입을 위한, 특별 규정을 제정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수입은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허가되어질 수도 있다.

4.2.1.2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병해충저발생 지역 및 공적 방제 프로그램

수입 체약국은 자국 내에,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저발생 지역(ISPM 4(병해충무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ISPM 22(병해충저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ISPM 29(병해충무발생 지역과 병해충저발생 지역의 인정) 및 공적 방제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도 있다. 식물위생 규정은, 수입국 내에서 그와 같은 지정을 보호하거나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물위생조치는 비차별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식물위생 수입 규정은, 그와 같은 지정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조치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 수출 체약국의 국가 내에서의 여타 공적 절차(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과 같은)와 관련된 지정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다른 NPPO에 의한 지정을 평가·승인하고 적절하게 회신하기 위하여, 식물위생 규제 시스템 내에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4.2.2 수입 허가(import authorization)

수입 허가는 일반적인 허가과 같이 또는 사안 별로 특정한 허가를 통하여 제공될 수도 있다.

일반 수입 허가

일반 수입 허가는 다음을 사용할 수도 있다:

- 특별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 다양한 품목들에 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입을 허가하는 특정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일반적인 수입 허가는 면허나 허가서를 요하지 않아야 하나, 수입 시 확인 대상일 수도 있다.

특정 수입 허가

특정 수입 허가는, 필요한 경우 수입에 대한 공적 합의, 예를 들면 면허 또는 허가서의 형태로 요구될 수도 있다. 이는 개별적인 화물 또는 특정한 원산지의 일련의 화물에 대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 긴급 또는 예외적 수입;
- 반입 후 검역 요건 또는 지정된 최종 사용 또는 연구 목적과 같은 특별하고 개별적인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가진 수입
- 반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추적하는 능력을 NPPO가 요구하는 수입

일부 국가는, 일반적인 수입 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허가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유사한 특별한 허가가, 일상적으로 된다면, 일반적인 허가의 개발이 권장된다.

4.2.3 금지

수입 금지는, 모든 원산지의 특정한 품목들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 또는

특히 특정 원산지의 특정한 품목들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에 특별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수입 금지는, 병해충위험 관리를 위한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사용되어야 한다. 금지는 기술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NPPO들은 동등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러나 무역에 덜 제한적인,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계약국들은, 그와 같은 조치가 자국의 적정보호수준을 충족한다면,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자국의 NPPO를 통해, 자국의 식물위생 수입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금지는 검역병해충에 적용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은 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설정된 병해충 허용수준의 대상이다.

금지품은 연구용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할 수도 있으며, 면허 또는 허가 제도를 통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포함한 제한된 조건 하에, 그들의 수입을 위한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4.3 경유 화물

경유 화물은 수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은 경유화물을 포함하고,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정당한 식물위생조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도 있다(IPPC VII.4, ISPM 25(경유 화물)). 화물을 추적하고, 그들의 보전성(integrity)을 확인하며, 화물이 경유 국가를 떠남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국가들은 반입항과 국가 내의 경로, 자국 영토 내에서 허가된 운송의 조건 및 시간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

4.4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관련 조치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은, 최소 충격의 원칙을 고려하면서, 위반사항 또는 긴급활동 시 취해진 식물위생 활동(IPPC VII.2(f); 자세한 정보는 ISPM 13(위반사항과 긴급활동 통보 지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수입된 화물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이 식물위생 규정에 부합되지 않고 최초 반입이 거절되는 경우 취해질 수도 있는, 식물위생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소독처리;
- 선별 또는 재손질(reconditioning);

- 규제물품(장비, 장소, 보관 지역, 운송수단 포함)의 감염제거(disinfection);
- 가공과 같은 특정한 최종 사용에 대한 지시;
- 재선적;
- 폐기(소각과 같은).

위반사항 또는 긴급활동을 요하는 경우의 발견은, 식물위생 수입규정의 개정, 수입 허가의 취소 또는 중단을 가져올 수도 있다.

4.5 규제의 틀을 요구할 수도 있는 여타 요소

국제협정은, 법적인 근거를 요하거나 또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행될 수 있는, 의무를 야기한다. 그러한 절차를 요하는 협의(arrangements)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위반 시의 통보;
- 병해충 보고;
- 공적 접촉창구의 지정;
- 규제 정보의 공표 및 배부;
- 국제 협력;
- 규정 및 문서의 개정;
- 동등성의 인정;
- 반입항에 대한 설명서;
- 공적 문서의 통보.

4.6 NPPO의 법적 권한

NPPO가 그 책임(IPPC IV)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NPPO의 직원 및 여타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권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수입된 품목들, 규제병해충 또는 여타의 규제물품이 존재할 수도 있는 장소(premlises), 운송수단 및 여타의 장소에 들어감;
- 수입된 품목들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검사 또는 정밀 검사;
- 수입된 품목들 또는 다른 규제물품으로부터, 또는 규제병해충이 있을 수도 있는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가져옴(시료가 폐기되는 분석

포함);

- 수입된 화물들 또는 다른 규제물품의 유치;
- 수입된 화물들 또는 규제병해충이 있을 수 있는 수송수단, 장소 또는 품목들을 포함하는, 여타의 규제물품에 대한 소독처리 또는 소독 처리를 요구;
- 화물의 반입 거부, 재선적 또는 폐기;
- 긴급활동 적용;
- 수입과 관련된 활동 또는 벌칙과 관련된 수수료 설정 및 징수(선택적).

5.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운영

NPPO는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운영 또는 감독(조직과 관리)에 대해 책임이 있다(section 2 참조). 이 책임은 특히 IPPC IV.2에서 유래한다.

5.1 NPPO의 관리 및 운영상 책임

NPPO는 그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적절한 관리 시스템과 자원을 가져야 한다.

5.1.1 행정

NPPO에 의한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행정은, 식물위생 법령, 규정의 효과적이고 일관적인 적용과 국제적 의무사항에 부합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수입과 연관된 다른 정부 서비스 또는 정부 기관(government services or government agencies)과의, 예 세관, 운영상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행정은, 국가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하지만, 기능적, 지역적 또는 여타의 구조적인 토대 위에서 구성될 수도 있다.

5.1.2 규제 개발 및 개정

식물위생 규정의 제정(issuing)은, 체약국의 책임(IPPC IV.3(c))이다. 그 책임과 일치하도록, 체약국은 식물위생 규정의 개발 또는 개정을, 자국 NPPO의 책임으로 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적절한 경우 NPPO의 주도 하에 다른 기관과 협의 또는 협력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해당 규정은, 그 국가의

통상적인 법적 및 협의 절차를 통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협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개발, 유지, 검토되어야 한다. 영향을 받는 산업계 및 해당 민간 분야 단체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과의 협의나 협력은, 규제 결정에 대한 민간분야에 의한 이해 및 승인을 증진시키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종종 규정의 개선에 유용하다.

5.1.3 예찰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정당성은, 규제 국가 내에서 규제병해충의 병해충 상황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된다. 병해충 상황은 변화할 수도 있으며, 그로 인해 식물위생 수입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수입국에서 재배되거나 재배되지 않는 식물에 대한 예찰은, 병해충 상황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되며(ISPM 6(예찰 지침)에 따라), PRA와 병해충 목록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5.1.4 병해충위험분석 및 병해충 목록화

PRA를 통한 것과 같은 기술적인 정당성은, 병해충이 규제되어야 하는가와 그들에 대해 적용될 식물위생조치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ISPM 11(검역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ISPM 21(규제비검역 병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 PRA는 특정한 병해충 또는 특정 경로 (예, 품목)와 관련된 모든 병해충에 대하여 실시될 수도 있다. 한 품목은, 가공의 정도와 용도에 의해 분류될 수도 있다(ISPM 32(병해충위험에 따른 품목 분류)). 규제병해충은 목록이 작성되어야 하며(ISPM 19(규제병해충 목록에 대한 지침)에 따라), 규제병해충 목록은 가용하여야(available) 한다(IPPC VII.2(i)). 만일 적절한 국제기준이 있다면, 조치는 그러한 기준을 고려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정당하지 않는 한, 더 엄격하지 않아야 한다.

PRA 절차의 행정적인 틀은, 가능하다면 개별 PRA 완료에 대한 시한과 우선 순위 결정에 대한 명백한 안내와 함께, 명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한다.

5.1.5 감사 및 준수(compliance) 절차

5.1.5.1 수출국에서의 절차 감사

식물위생 수입 규정은, 보통 생산 절차(통상 관련 작물의 재배 기간 중) 또는 특정 소독처리 절차 같은, 수출국에서 행해져야 할 특정한 요건을 포함한다. 새로운 무역의 개발과 같은 특정 경우에는, 수출국의 NPPO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하여, 수입국의 NPPO에 의한 수출국에서의 감사를 요건에 포함할 수도 있다:

- 생산 시스템;
- 소독처리;
- 검사 절차;
- 식물위생 관리;
- 인증 절차;
- 정밀 검사 절차;
- 예찰.

수입국은 감사의 범위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감사에 대한 협의 (arrangements)는, 수입 촉진과 관련된 양자 간 협정(agreement), 협의 (arrangement) 또는 사업 프로그램으로 문서화 된다. 그러한 협의는, 일반적으로 수입국으로 반입 시 최소한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에서의 화물에 대한 통관(clearance)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감사 절차의 유형은 영구적인 조치로서 적용되어서는 안되며, 수출국에서 그 절차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적용 기간의 제한에 관한 이러한 접근은 5.1.5.2.1항에서 언급한 현행의 현지검역(pre-clearance)과 다를 수도 있다. 감사의 결과는 수출국의 NPPO에도 제공되어야 한다.

5.1.5.2 수입 시 준수 확인

준수 확인을 위한 3가지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문서상 확인;
- 화물의 보전성(integrity) 확인;
- 식물위생 검사, 정밀검사 등.

수입된 화물과 여타 규제물품에 대한 준수 확인은 다음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다:

- 식물위생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결정;
- 식물위생조치가 검역병해충의 유입 방지 및 규제비검역병해충의 들어옴의 제한에 효과적인가를 확인;
- 그 품목과 함께 들어오는 것(entry)이 예견되지 않는 잠재적 검역병해충 또는 검역병해충의 검출.

식물위생 검사는 NPPO에 의해서 또는 그의 권한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준수 절차는 신속히 실시되어야 한다(IPPC VII.2(d), VII.2(e)). 가능한 경우, 준수 절차는 무역의 흐름에 대한 방해와 신선한 상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입 규제에 관여하는 세관과 같은 다른 기관과의 협력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5.1.5.2.1 검사

검사는 반입항, 환적지, 목적지, 또는 식물위생상의 보전성이 유지되고 있고 적절한 식물위생 절차가 실시될 수 있음을 전제로, 주요 시장과 같은, 수입된 화물이 확인될 수 있는, 기타의 장소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또한, 양자 간 협정이나 협의에 의해, 수출국의 NPPO와의 협력 하에, 현지검역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원산지 국가에서 실시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하는, 식물위생 검사는 다음에 적용될 수도 있다:

- 반입 조건으로서 모든 화물에 적용
- 모니터링 수준(즉, 검사되는 화물의 수)이 예견된 위험에 근거하여 설정된 경우,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적용

검사와 시료채취 절차는, 사전에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절차 또는 특정 절차에 근거할 수도 있다.

5.1.5.2.2 시료채취

검사의 목적 또는 후속의 실험실 정밀검사 또는 참고 목적으로 화물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다(ISPM 31(화물의 시료채취 방법론) 참조)).

5.1.5.2.3 실험실 정밀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

정밀검사는 다음을 위하여 필요할 수도 있다:

- 육안으로 검출된 병해충에 대한 분류동정;
- 육안으로 분류된 병해충에 대한 확인;
- 검사에 의해 검출되지 않는, 우려되는 감염에 대한 요건의 준수 점검;
- 잠재적 감염에 대한 점검;
- 감사 또는 모니터링;
- 특히 위반사항의 경우 참고 목적;
- 신고 된 물품의 확인.

정밀검사는 적절한 절차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제적으로 합의된 약정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정밀검사 결과의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학계 및 국제 전문가나 연구소와의 협력이 권장된다.

5.1.6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SPM 13에 포함되어 있다.

5.1.6.1 위반 시의 활동

식물위생 수입 규정의 위반과 관련하여 식물위생 활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 목록에 있는 검역병해충이 규제되는 화물과 관련되어 검출;
- 수입된 재식용 식물 화물에서, 이들 식물에 요구되는 허용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목록에 있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검출;
- 포장 검사, 실험실 정밀검사, 생산자 또는 시설의 등록, 병해충 모니터링 또는 예찰의 부족과 같은, 정해진 요건(양자 간 협정 또는 협의, 수입 허가서 조건)이 충족이 실패했다는 증거;
- 신고 되지 않는 품목, 흙, 또는 일부 여타의 금지품의 존재 또는

특정된 소독처리 충족 실패의 증거로 인한 것과 같이, 수입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화물의 발견;

- 무효한 또는 잃어버린 식물위생증명서나 여타의 요구되는 문서;
- 금지된 화물이나 물품;
- ‘경유’ 조치의 충족 실패.

식물위생 활동의 유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이며, 확인된 병해충위험에 맞도록 최소한 필수적이어야 한다. 불완전한 식물위생증명서와 같은 행정상의 실수는, 수출국 NPPO와의 연락을 통하여 해결될 수도 있다. 다른 위반(infringements)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유치: 이는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되는 경우, 가능한 최대한, 화물의 손해를 피하기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이용될 수도 있다.

선별 및 재배치(reconfiguring): 적절한 경우, 재포장을 포함한 화물의 선별 또는 재배치를 통하여, 영향을 받은 물품을 제거할 수도 있다.

소독처리: 효과적인 소독처리가 가능할 때 NPPO에 의해 이용된다.

폐기(destruction): NPPO가 해당 화물을 다른 방법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고려할 경우에, 화물은 폐기될 수도 있다.

재선적: 위반 화물은 재선적에 의하여 그 국가로부터 제거될 수도 있다.

규제비검역병해충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 활동은 국내 조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다면, 허용수준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규제되는 동등한 물질에 대해 허용된 경우, 예를 들면, 소독처리 또는 등급 낮추기(down grading), 또는 재분류를 통하여, 해당 화물에 있는 병해충 정도가, 요구되는 허용수준에 적합한 정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NPPO는 필요한 안내 사항(instructions)의 발행과 그 적용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시행은 통상 NPPO의 기능으로 간주되지만, 다른 기관은 이를 돕도록 권한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NPPO는, 정착이나 확산의 위험이 없는 경우(예: 소비용을 가공용으로의 용도 변화 또는 어떤 병해충이 정착이나 확산할 수 없는 생활사에 있을 때)와 같이, 또는 다른 일부 이유로, 특정 상황에서 식물위생조치가 기술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 규제병해충이나 다른 위반사례 경우에 대해 식물 위생조치를 적용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5.1.6.2 긴급활동

긴급활동은, 검역병해충 또는 잠재적 검역병해충의 검출과 같은, 새로운 또는 예기치 못한 식물위생 상황에서 요구될 수도 있다:

- 식물위생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에서;
- 존재가 예상되지 않았고, 식물위생조치가 정해지지 않은 화물 또는 여타 규제물품에서;
- 수입된 품목과 관련된 운송수단, 저장 장소 또는 다른 장소의 오염 병해충으로.

위반사례에 적용되는 것과 유사한 식물위생 활동이 적절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현행 식물위생조치를 수정하거나, 또는 검토와 완전한 기술적 정당성이 있을 때까지는 잠정조치를 채택하게 될 수도 있다.

긴급활동을 요하는 일반적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이전에 평가되지 않은 병해충. 목록에 있지 않은 생물체는, 그들이 전에 평가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 식물위생 활동을 요할 수도 있다. 발견(interception) 시, NPPO가 병해충위험을 야기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물체는 일차적 근거(preliminary base)로 규제병해충으로서 분류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충분한 기술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NPPO의 책임이다. 만일 잠정조치가 정해졌다면, NPPO는, 적절하다면 수출국 NPPO의 참여로, 추가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병해충의 규제 또는 비규제 상황을 적시에 정하기 위한 병해충위험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특정 경로에 대해 규제되지 않은 병해충. 긴급 식물위생 활동은 특정 경로에 관하여 규제되지 않는 병해충에 적용될 수도 있다. 규제된다고 하여도, 이들 병해충이, 그 목록이나 조치가 작성된, 원산지, 품목 또는 상황이 예기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목록에 등재되지

않거나 특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한 병해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그 병해충의 존재(occurrence)가 장래에 예견될 수도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적절한 목록이나 다른 조치 내에 포함되어야 한다.

적절한 분류동정의 미흡.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병해충은, 그 병해충이 적절히 분류동정될 수 없거나 또는 분류학적으로 부적절하게 기술되었기 때문에, 식물위생 활동을 정당화 할 수도 있다. 이는 표본이 기술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분류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분류동정을 허용하지 않는 조건에 있거나, 또는 조사된 생육 단계가 필요한 분류 수준까지 동정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분류동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NPPO는 취해진 식물위생 활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병해충이 적절한 분류동정을 허용하지 않은 형태로(예. 알, 어린 유충영(instar larvae), 불완전 형태 등) 일상적으로(routinely) 검출되는 경우에는, 분류동정을 하는데 충분한 표본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수출국과의 접촉은, 분류동정을 돕거나 또는 추정적인(presumed) 분류동정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상태에서, 그러한 병해충은 임시로 식물위생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일단 분류동정이 이루어지면, 그리고 PRA에 근거하여, 그러한 병해충이 식물위생 활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NPPO는, 분류상의 문제와 식물위생 활동을 요하는 근거를 인지하면서, 그러한 병해충을 관련 규제병해충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관심 있는 체약국은, 그러한 형태로 검출될 경우에, 향후의 활동은 추정된 분류동정에 근거할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should be informed). 그러나, 그와 같은 향후의 식물위생 활동은, 확인된 병해충위험이 있고 수입된 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의 존재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원산지과 관련하여만 취할 수 있다.

5.1.6.3 위반 및 긴급활동의 보고

차단(interception)이나, 위반사항 경우와 긴급활동의 보고는, 수출국

NPPO가 수입 시 자국의 물품에 대해 취해진 식물위생 활동의 근거를 이해하고, 수출 시스템의 시정 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IPPC 체약국의 의무이다.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5.1.6.4 식물위생 규정의 철회 및 수정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또는 중대한 위반 또는 긴급활동의 발생을 보장하는 차단(interception) 시, 수입하는 체약국의 NPPO는 수입을 허용하는 권한 (예. 허가서)을 철회하고, 식물위생 규정을 수정하거나, 개정된 반입 절차 또는 금지와 함께 긴급 또는 잠정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다. 수출국의 NPPO는 변경과 그 변경에 대한 논리를 신속히 통보받아야 한다.

5.1.7 NPPO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인증 시스템

NPPO는 자체 통제와 책임 하에, 특정 한정된 기능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다른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대행사 또는 사람을 인증할 수도 있다. NPPO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상의 절차가 필요하다. 추가로, 자격을 보여줄 수 있고, 감사, 시정조치, 시스템 검토 및 권한의 취소에 대한 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5.1.8 국제 연락

체약국들은 다음을 포함한, 국제적인 의무(IPPC VII 및 VIII)를 가진다.

- 공적 연락창구의 제공;
- 특정 반입항의 통보;
- 규제병해충의 목록, 식물위생 수입요건, 금지의 공표 및 전달;
- 위반사항 및 긴급활동의 통보(ISPM 13);
- 요청이 있을 경우 식물위생조치의 근거 제공;
- 관련 정보의 제공.

행정적인 합의(arrangements)는, 이들 의무들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되는 것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

5.1.9 규제 정보의 통보 및 배포

5.1.9.1 신규 또는 수정된 식물위생 규정

새로운 또는 개정된 식물위생 규정 제안은 공표되어야 하며, 의견 (comments)과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주면서, 요청이 있는 경우, 관심 있는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5.1.9.2 설정된 규정의 배포

설정된 수입 규정, 또는 그 규정의 관련 부분은, 관심이 있거나 (interested) 영향을 받는 체약국, 적절한 경우, IPPC 사무국 및 자국이 회원인 RPPO(s)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다른 관심 있는 당사자(parties)(수입 및 수출 업계, 기관 및 그들의 대표)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수도 있다. NPPOs는, 공표(publication)에 의해 수입규제 정보를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한, 인터넷 웹사이트와 IPPC의 국제식물위생포탈(IPP, <http://www.ippc.int>)을 통한 연계를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도록 권장된다.

5.1.10 국내 연락

국가 내에서 협력 활동, 정보공유 및 공동 통관 활동을 촉진하는 절차는, 적절한 정부 기관 또는 관청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

5.1.11 분쟁 해결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이행은 다른 국가의 기관과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NPPO는, 다른 NPPOs와의 협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절차와, 공식적인 국제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요청을 고려하기 전에, “가능하면 빨리 그들 사이에 협의해야 하는”(IPPC VIII.1)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5.2 NPPO의 자원

체약국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NPPO에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IPPC IV.1).

5.2.1 훈련을 포함하는, 직원

NPPO는:

- 적절한 자격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인증해야(authorize) 하며;
-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자격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절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제공됨을 보장해야 한다.

5.2.2 정보

NPPO는, 가능한 한 빨리 적절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이용가능 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 적절한 경우,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측면을 포함한 지침 문서, 절차 및 작업 지시
- 그 국가의 식물위생 수입 규정
- 생물, 기주범위, 경로, 전세계의 분포, 검출 및 분류동정 방법, 소독처리 방법을 포함한 규제병해충에 대한 정보

NPPO는, 병해충위험분석 중에, 병해충의 분류(categorization)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국가 내에서 병해충의 존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NPPO는, 모든 규제병해충에 대한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 규제병해충 목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SPM 19에 있다.

규제병해충이 그 국가 내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분포, 병해충무발생 지역, 공적 방제와, 규제비검역병해충의 경우에는 재식용 식물에 대한 공적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체약국은, 규제병해충, 예방과 방제 수단에 관한 정보를 자국 영토 내 배포해야 하며, 자국의 NPPOs에게 그러한 책임을 부과할 수도 있다.

5.2.3 장비 및 시설

NPPO는, 다음을 위하여 적절한 장비와 시설이 이용 가능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 검사, 시료채취, 정밀 검사, 예찰 및 화물 확인 절차;
- 정보에 대한 연락 및 접근(가능한 한 전자적 수단에 의해)

문서화, 의사소통과 검토

6. 문서화

6.1 절차

NPPO는,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지침 문서, 절차 및 작업 지시를 유지해야 한다. 문서화 되는 절차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병해충 목록의 준비;
- 병해충위험분석;
- 적절한 경우,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저발생 지역,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생산포장 및 공적 방제 프로그램의 설정;
- 검사, 시료채취, 정밀 검사 방법(시료의 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포함);
- 소독처리를 포함한 위반 시의 활동;
- 위반사항의 통보;
- 긴급활동의 통보.

6.2 기록

적절할 경우,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ISPMs의 관련 조항에 따라서, 수입규정에 관한 모든 활동, 결과 및 결정의 기록은, 보관되어야 한다:

- 병해충위험분석의 문서화(ISPM 11 및 다른 관련 ISPMs에 따라서);
- 설정되었을 경우, 병해충무발생 지역, 병해충저발생 지역 및 공적 방제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화 (해당 병해충의 분포에 관한 정보와

병해충무발생 지역 또는 병해충저발생 지역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조치 포함);

- 검사, 시료채취 및 정밀검사의 기록;
- 위반 및 긴급활동 (ISPM 13에 따른).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 화물에 대한 기록이 보관될 수도 있다:

- 특정한 용도를 가짐;
- 반입 후 검역을 받거나 소독처리 절차 대상;
- 병해충위험에 따라, 후속 식물위생 활동이 필요한 것(역추적 포함); 또는
-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7. 의사소통

NPPO는, 다음과 연락하는 의사소통 절차를 가지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수입자와 적절한 업계 대표들;
- 수출국의 NPPOs;
- IPPC의 사무국;
- 회원으로 있는 RPPOs의 사무국.

8. 검토 기작

8.1 시스템 검토

체약국은, 자국의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는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NPPO와 인증된 기관들이나 사람의 활동을 감사하고, 필요시 식물위생 법령, 규정 및 절차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8.2 사례(incident) 검토

NPPO는, 위반사항과 긴급활동의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검토는 식물위생조치의 채택이나 개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부속서는 2017.4월 CPM 12에서 채택되었다.

이 부속서는 기준의 규정 부분이다.

부속서 1: 수출국에서 수입국에 의한 화물의 준수 확인을 위한 협의 (arrangements) (2017)

수입국의 NPPO는, 보통 수입국에서 화물의 반입에 대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준수를 확인한다. 그러나 무역의 물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 체약국들은, 수입국의 NPPO에 의해 수출국에서 수행되는 확인 절차를 허용하는 합의에 대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의는, 이 기준에서 설명한 수출국에서의 절차 감사(audits of procedures)와는 구분된다(5.1.5.1).

어떤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의 NPPOs는, 자발적으로, 사안에 따라 (case-by-case), 양측이 동의한 기간 동안, 수출국에서, 특정 품목들의 화물에 대해 수행되어야 할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의(이제부터 “협의(arrangement)”이라 칭한다)만을 작성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이 부속서에서 설명된 협의는, 식물위생조치로서 또는 무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서 설정되어서는 않된다.

합의의 작성은, 다음 상황에서 무역 물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 목적지에서 화물의 신속한 합격(release);
- 반입항에서 화물의 거부와 관련된 조치가 매우 비싸거나 적용하기 어려움;
- 반입항에서 검사가 상업적 포장재(예, 품목이 개별적으로 포장되고 파괴적인(destructive)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 또는 품목의 품질(예, 품목이 매우 상하기 쉬움)에 나쁘게 영향;
- 위반사항 경우를 다루려면, 추가의 기반시설이 필수적인 경우.

특정 규제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에 근거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이미 설정되었었다면, 해당 합의의 조건(terms)이 설정되어야 한다.

합의는 이 기준과, 적절한 경우 ISPM 23(검사 지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설정되고 공표된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합의에 따라 확인된 화물은, 반입항에서 다시 동일한 확인 절차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수입국의 NPPO는, 반입항에서 서류 및 아이디(identity) 확인 같은, 다른 확인 절차를 수행할 수도 있다.

수입국과 수출국 NPPOs간의 어떤 합의에도 불구하고, IPPC I.2, IV.2(a), IV.2(b), IV.2(c), IV.2(d), IV.2(e), IV.2(g)와 V.1에 명시되어 있듯이, 식물위생증명서 발급은 수출국 NPPO의 독점적인 책임이다. 이 합의 하에,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NPPO에 의해 수행되는 어떤 활동도, 수출국의 법령의 대상이고 합치되어야 한다.

다음의 항들은, 수입국 NPPO에 의한 수출국에서 화물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합의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한다.

1. 합의의 일반적인 요건

합의는, 적정할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 자문과 함께, 수입국과 수출국의 NPPOs에 의해 합동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합의의 재정적 면은, 관련 이해당사자 자문과 함께, 수입국의 수출국의 NPPOs에 의해 합의되어야 한다.

합의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변화를 다룰 수 있는 기작이 있어야 할 수도 있다. 준수 확인 활동을 감소시키는 조건과 합의를 일시 정지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설명되어야 한다.

2. 합의를 작성하는 절차

합의를 작성하는 절차의 단계가 아래 요약되어 있다.

2.1 제안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NPPO가 합의 요청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 제안은, 시작하는 NPPO 또는 관련 이해당사자가 찾아낸 필요성에 대한 대응일 수도 있다. 이 제안은 합의의 이유뿐 아니라 범위와 목적도 구체화해야 하며, 양쪽 NPPOs에 의해 동의되어야 한다.

이 제안에서 고려할 수도 있는 요인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합의의 시점과 기간;
- 확인 수준과, 적정한 경우 특정 품목들과 규제병해충에 대한 시료채취 방법(schemes);
- 합의의 재검토와 평가를 개시할 수 있는 기준(criteria);
- 합의를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하는 기준(criteria);
- 자원(resources)의 가용성;
- 프로그램 이행의 타당성(feasibility).

2.2 평가

합의의 제안을 받은 NPPO는, 시의 적절하게 제안을 검토하고 반응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안의 평가는, 병해충위험 우려, 운영과 경제적 타당성과 규제적인 면에 대한, 합의의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2.3 요소들

합의를 제안하는 NPPO는, 작성에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안하는 국가의 요청이 있다면, 상대 NPPO가 작성을 지원할 것이 권장된다.

수입국 NPPO와 수출국의 NPPO 간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요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화물의 시료채취와 검사;
- 적정한 검사 시설;
- 정밀검사 절차;
- 소독처리의 확인;

- 화물의 보전성 확인;
- 적절한 경우, 화물의 준수를 확인하는, 다른 단계에 대한 시간과 장소;
- 화물 도착의 반입항 통보;
- 식물위생증명서와 함께 증명서가 동반하는지 여부;
- 합의 하의 문항들을 이행할, 자격 있는 직원 가용성;
- 준수 확인 활동의 시점;
- 이 합의에 참가하는 재배자와 수출자들을 위한, 절차와 비용 또는 예상 비용 승인;
- 파견되는 직원을 위한 숙소, 교통, 작업 건강, 안전, 보안과 다른 물류 면.

준수 확인의 단계들은, 합의에 들어가는 NPPOs들에 대해 정해질 것이다.

2.4 기술적 요건들

합의의 기술적 요건들은, 사안에 따라 결정되고 작성되어야 하며, 합의에 설명되어야 한다.

합의에는 다음에 대한 특정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법적, 규제적 권한;
- 식물위생과 다른 관련 법령 또는 규정;
- 역할과 책임(NPPO, 수출자, 재배자, 다른 관련 이해당사자의);
- 활동 시점과 기간;
- 규제물품;
- 수입국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규제병해충과 이들 병해충에 대한 관련 식물위생조치;
- 시료채취, 검사, 정밀검사, 소독처리 확인과 화물의 보전성 확인 같은 식물위생 활동;
- 화물의 준수 확인에 사용되는 기반시설과 장비;
- 수입국의 NPPO에게 수출국의 NPPO에 의해, 유지하고 제공해야 하는 문서화;
- 재정적 면;
- 위반사항의 통보;
- 위반에 따른 화물의 시정조치;

- 합의의 재검토 빈도와 시점;
- 합의의 재검토, 평가, 일시적 중지 또는 종료로 결론날 수 있는 기준 (criteria).

3. 합의의 이행

이 합의에서 기술된 준수의 확인은, 이행 조건 대상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확인은, 특정 품목의 모든 수출되는 화물, 또는 규제 품목의 분류 (categories) 또는 선적 기간 중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부 비율에서만 확인 될 수도 있다.

이행되어질 준수 확인 활동은, 합의 하에 있는 것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준수 확인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입 시 동일한 확인을 요구하면 않된다. 그러나 수입국에서 수행되는 다른 절차들은, 다음일 수도 있다:

- 화물 서류 및 아이디 점검;
- 포장재의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와 화물의 식물위생 보전성이 손상 되었을 수도 있는 경우, 화물의 검사;
- 컨테이너 내 오염 병해충에 대한 화물 검사;
- 수출국에서 검사 당시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위협에 대응하는 화물 검사;
- 합의가 수출국에서 검사 후, 식물위생조치를 허용하는 경우, 화물 검사 (예, 과실판리에 대한 수송 중 저온처리).

4. 합의의 재검토

합의의 효과는, 합의를 개선하거나 완화 또는 종료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검토의 빈도와 시점은 합의에 기술되어야 한다. 합의의 일부 요인들은, 다른 것들보다 자주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기존의 합의의 변경은, 수입국의 NPPO 또는 수출국의 NPPO에 의해 제안

될 수 있고, 이행 전 양측 NPPOs의 합의가 필요하다.

5. 합의의 종료

합의의 설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예, 양국 간 무역 물류의 변경), 또는 합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종료되어야 한다.

일단 합의가 종료되면, 확인 절차는 수입국에서 실시될 것이다.

이 부속서는 2023.3월 CPM 17에서 채택되었다.

이 부속서는 기준의 규정 부분이다.

부속서 2: 특정 수입 허가(specific import authorization)의 사용

수입국의 식물보호기구(NPPO)는, 수입이 필수적이라는 공적 합의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다면 식물위생 이유로 수입이 금지될 경우; 또는 특정 목적, 물품 또는 상황에 대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이 기준의 4.2.2에서 언급한 특정 수입 허가(SIAs)의 사용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식물위생 수입 규제 시스템의 부분으로서 SIAs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NPPOs는 여전히, 이 기준의 5.1.9.2와 IPPC VII.2(b)에서 설명된 대로, 이들에 대한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작성하도록 요구된다.

이 부속서는, SIAs의 사용이 NPPO에 의해 요구될 수도 있는 상황과, SIAs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그리고 관련자들의 각각의 책임이 기술되어 있다. 특정 수입 허가는,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 적용되며, 각각의 특정 수입 상황에 따라 맞춤으로 작성된다. 그들은 개별 화물 또는 특정 원산의 일련의 화물들에 발급되어질 수도 있다. 일부 국가들이 그들의 SIAs에 비식물위생적 요건을 포함하는 것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부속서는 식물위생 요건만을 다룬다. 이 부속서는, 이 기준의 4.2.2에서 찾을 수 있는, 일반적 수입 허용, 또는 이 기준의 4.3에서 찾을 수 있는 경유 허용에 대한 정보는 다루지 않는다.

1. 특정 수입 허가의 종류

특정 수입 허가는, 수입국의 NPPO에 의해 결정된 대로, 수입 허가서, 면허 또는 다른 종류의 서면 허가의 양식으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 종이 또는 전자 양식일 수도 있다.

2. 특정 수입 허가의 요소들

SIAs가 사용될 경우, 수입국의 NPPO에 의해 수입자에게 발급되어야 한다.

2.1 필요한 정보

다음의 정보가 SIA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이다:

- 발급하는 NPPO의 이름, 확인 목적을 위한 접촉 정보 그리고 수입 국가 명;
- SIA 번호의 구분 코드;
- 수입자 정보 (예.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발급일;
- 해당 SIA에 의한 다뤄지는 화물의 설명;
- 원산지 국가와 수출 또는 재수출 국가;
- 품목의 용도 또는 화물을 구성하는 품목들;
- 식물위생 수입요건 (이들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 유효기간.

SIAs에 포함될 수도 있는 다른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해당 화물 내 품목의 수량 (화물을 구성하는 단위 수 또는 무게 또는 부피);
- 허가가 개별 화물을 위한 것인지 일련의 화물들을 위한 것인지;
- 수송 수단;
- 반입항;
- 권한 있는 발급자의 이름과 서명;
- 발급 NPPO를 구분하는 공적 봉인, 스탬프 또는 표식;
- 수출자 정보 (예. 수출자의 이름, 주소);
- 해당 화물이 향하게 되는 장소 (예. 반입 후 검역 시설, 가공 시설); 그리고
- 소독처리 업자.

2.2 언어

수입국의 NPPO는, 그들의 SIAs가 발급되는 언어 또는 언어들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FAO의 공식 언어 중 하나, 가급적이면 영어도 사용하도록 권고된다.

3. 특정 수입 허가의 사용

다음은, SIAs 사용이 적절할 수도 있는, 수입과 관련된 목적, 물품과 상황의 예들이다:

- 연구와 과학적 목적;
- 전시 목적;
- 교육 목적;
- 종교 또는 문화적 목적(예. 종교적 축제, 조상의 관습);
- 수입국 NPPO가, 반입 후 어느 기간 동안, 추적 가능성과 관리를 요구하는 물품;
- 긴급 또는 예외적인 상황;
- 생물방제제와 다른 유용 생물체;
- 일반 수입 허용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들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 일반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물품.

위의 목록은 완벽하도록(exhaustive) 의도된 것이 아니며, 국가들은 제공된 예에 대하여도 SIAs를 사용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4. 책임

4.1 수입국 NPPO

수입국 NPPO의 책임은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해야 한다:

- SIAs가 필요한 규제물품과 용도에 대한 정보를 공개 (예. NPPO의 웹사이트에);
- SIAs에 필요할 정보들 분석하고 구분하는 절차 구비;
- 문제가 될 경우, 관련자들과 의사소통하는 절차를 포함하는, SIAs를 수정, 일시 중지 또는 취소하는 절차 구비;
- 수입자가 SIA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수입자가 완성해야 하는 신청 양식을 공개;
- SIAs에서 사용되는 언어 또는 언어들을 언급;

- 해당 수입자에게 모든 요건을 의사소통;
- SIAs 내에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명확하게 특정(이들이 설정된 경우);
- NPPO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와 보증이 수입자에 의해 제공되었다면, 과도한 지연 없이 SIAs를 발급;
- SIAs의 진본 확인과 필요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청이 있으면, 수출국의 NPPOs에 정보를 제공; 그리고
- SIAs가 필요한 무역과 준수를 모니터링하고, 적정할 경우, SIAs를 일반 수입 허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

4.2 수입자

수입국의 NPPO에 의해 결정된 대로, 수입자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필요한 상황에서, 수입 전 SIA 획득;
- SIA의 요건을 준수;
- 요청되면, 수출자에게 SIA를 제공;
- 요청되면, 수입국의 NPPO에 수입 시기 또는 다른 정보를 통보;
- 필요하다면, 수출국의 NPPO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SIA 번역을 제공.

4.3 수출자

수출국의 NPPO에 의해 요청될 경우, 수출자는 다음을 제공하여야 한다:

- 수출국 NPPO에 알아볼 수 있는(legible) SIA;
- 수출국 NPPO에 의해 지정된 언어로 SIA 번역;
- 수출자와 관련 있는 SIA의 요건을 준수한다는 증거.

4.4 수출국 NPPO

수출국 NPPO는:

- 수입국의 NPPO로부터 SIA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수출자에게 SIA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 수입국 NPPO에 SIA를 확인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 해당 화물이, SIA에 포함된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